

선운지구다사로움 공가세대 일반공급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62)225-228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국민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24.(화)	2026.06.08.(월)	2026.06.15.(월) ~ 2026.06.16.(화)	2026.06.19.(금)	2026.06.22.(월)~ 2026.06.24.(수)	2026.06.26.(금)~ 2026.06.29.(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6.08.(월) 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49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24.(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8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6.15.(월)~2026.06.16.(화)	2026.06.19.(금)	2026.06.22.(월)~2026.06.24.(수)	2026.06.26.(금)~2026.06.29.(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서류제출장소 (공고문 7P참고)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사업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를 따릅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분양권전매, 계약자 명의변경 또는 공동명의의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10년 이상 임대 후 분양전환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명도된 주택」입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 보수 공사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디지털 도어락, 보일러,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마루, 장판, 욕실, 싱크대, 세대열쇠, 전기·전자제품, 기타 시설물 및 마감재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일체의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 일부세대를 개방하오니 세대개방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시에 세대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개방일정 및 개방세대

구 분	청약접수 전 세대개방	당첨자 세대개방
세 대 개 방 일 정	2026.06.12.(금)	당첨자 세대별 일시 개별통보
개 방 세 대	105동 1406호(49A), 104동 403호(76A), 108동 1202호(84A)	당첨자별 해당 세대
방 문 절 차	관리사무소 방문 → 신분증 제시 및 방명록 작성(작성 시 비밀번호 확인) → 세대 현관카드 (수령) → 해당동 이동(카드 지참) → 세대 내부 확인	
개방시간 및 문의	선운지구다사로움 관리사무소 운영시간은 10:00~16:00이며, 해당 시간 외 방문을 원하실 경우 공사로 별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기타 단지 여건, 세대내부 상태, 마감재 등은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34 (선운지구다사로움 아파트)

■ 공급규모 : 아파트 15~18층 8개동 590세대 중 분양전환 완료 566세대, 잔여 4세대 외 공가세대 일반분양 후 잔여 20세대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m²)

구 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 표기	세 대 별 주 택 면 적(m²)						공급세대수
					공 급 면 적			대지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국민주택	2026910149	01	049.7426A	49A	49.7426	20.5474	70.2900	32.5104	19.7603	90.0503	15
		02	076.8786A	76A	76.8786	24.6197	101.4983	50.2457	30.5399	132.0382	2
		03	084.8497A	84A	84.8497	26.8092	111.6589	55.4554	33.7064	145.3653	3
	합 계										2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합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각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약식표기	동	호	세 대 별 주 택 면 적(m ²)					분양가격(원)			난방방식	입주가능 시기
			공 급 면 적(m ²)			기타공용(m ²)	계약면적(m ²)	계(100%)	계약금(10%)	잔금(90%)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계약 시	'26. 09 28.까지		
49A (15호)	102	103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82,000,000	18,200,000	163,800,000	개별난방	잔금납부 완료 후
	102	401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89,000,000	18,900,000	170,100,000		
	102	404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0,000,000	19,000,000	171,000,000		
	102	1002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2,500,000	19,250,000	173,250,000		
	102	1003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2,500,000	19,250,000	173,250,000		
	102	1404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2,500,000	19,250,000	173,250,000		
	102	1501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2,500,000	19,250,000	173,250,000		
	105	104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82,000,000	18,200,000	163,800,000		
	105	206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84,000,000	18,400,000	165,600,000		
	105	1303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2,500,000	19,250,000	173,250,000		
	105	1306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2,000,000	19,200,000	172,800,000		
	105	1406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2,000,000	19,200,000	172,800,000		
	102	302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88,000,000	18,800,000	169,200,000		
	102	1402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92,500,000	19,250,000	173,250,000		
	102	101	49.7426	20.5474	70.2900	19.7603	90.0503	181,000,000	18,100,000	162,900,000		
76A (2호)	104	403	76.8786	24.6197	101.4983	30.5399	132.0382	272,000,000	27,200,000	244,800,000		
	104	1302	76.8786	24.6197	101.4983	30.5399	132.0382	278,500,000	27,850,000	250,650,000		
84A (3호)	108	203	84.8497	26.8092	111.6589	33.7064	145.3653	283,000,000	28,300,000	254,700,000		
	106	304	84.8497	27.7687	112.6184	33.7064	146.3248	287,000,000	28,700,000	258,300,000		
	108	1202	84.8497	27.7687	112.6184	33.7064	146.3248	295,500,000	29,550,000	265,950,000		

※ 본 아파트는 10년 공공임대주택(85㎡ 이하) 최초 임차인모집공고(2014.08.29.)를 거쳐 임차인을 모집하여 10년 임대(2014~2024) 후 분양전환을 실시한 주택 중 "입주자 퇴거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명도된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주택가격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6.19.(금)~2026.06.28.(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6.19.(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서류(정당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 일정 및 장소

대 상 자	서류 제출 일시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26.06.22.(월)~ 26.06.24.(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사업팀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 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내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제출 서류	○		신분증 (방문 시 지참)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을 당첨자(예비입주자)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당첨자(예비입주자) 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해외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보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통보 받은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방문 제출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예비입주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		위임장	본인	- 당첨자(예비입주자)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옥 1층 현장제출 또는 등기우편(일반우편 불가) 제출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제출의 경우 우체국 소인일자 기준 06월 24일 접수분까지 정상접수로 인정됩니다. 현장접수의 경우 10시부터 16시까지 접수가 가능하고, 점심시간(12시~13시)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보안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6.26.(금) ~ 2026.06.29.(월)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불가)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 기관명	납부계좌	납부기한(일괄적용)	예금주
분양대금(공급금액)	광주은행	142-127-000070	2026.09.28.(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명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3901동 0104호 홍길동 → 39010104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자격검증 결과 공급자격을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과 지정된 잔금 납부일까지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지정된 잔금은 계약체결시 안내해드리는 광주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잔금** : 잔금납부기한(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2026.09.28.(월)) 이내 납부(선납할인 미적용)

- 잔금납부는 계약체결시 안내해드리는 광주은행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완납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2026.09.28.(월)) 이내 잔금납부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선납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기한까지 입주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소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 : 연 6.5% (추후 변동 가능)]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일할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잔금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계약금 상당)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잔금에 대한 대출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에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합니다.(관리비에치금액은 계약자에게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입주 시 잔금(완납) 및 관리비에치금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한하여 계약자 본인에게 열쇠가 불출(입주)되며, 입주일 (열쇠불출일 기준)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잔금납부기한까지 미입주시는 잔금납부기한 마지막날 익일부터 관리비 등 부과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대 상 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	서류 제출 장소
예비입주자	2026.07.01.(수)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층 2호 ~ 3호실

- 예비입주자는 2026.07.01.(수) 11:00까지 입장 완료 후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하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 동·호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일 2026.07.01.(수)에 관리주체(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동·호 지정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2026.07.01.(수)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가능하며, 익일까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참고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제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광주광역시도시공사) 콜센터 문의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제일건설 주식회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등록번호	204171-0000312	135811-0093658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총세대수 : 590세대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주차장 설치 관련 정보	주차대수 : 665대 (장애인 주차 29대 포함)	지상 : 165대
		지하 : 500대

공 급 문 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본 사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 아파트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34 (선암동, 선운지구다사로움아파트) ◆ 홈 페 이 지 : http://www.gmcc.co.kr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분양문의(콜센터) : 062-225-2280
---	---	--